

#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46,023,236	76,380,697
일반회계	2,184,101,998	65,523,060
특별회계	361,921,238	10,857,637
공기업특별회계	237,213,738	7,116,41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7,179,589	3,515,38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0,034,149	3,601,024
기타특별회계	124,707,500	3,741,225
교통사업 특별회계	58,587,446	1,757,62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90,358	62,71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194,784	95,844
대지보상 특별회계	2,143,439	64,303
기반시설 특별회계	103	3
수질개선 특별회계	31,237,216	937,116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837,294	205,119
균형발전특별회계	20,616,860	618,5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179,38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